

용인시 과·소 업무지도 규정

제정	2017. 10. 2	훈령	제421호
일부개정	2018. 10. 16	훈령	제437호
일부개정	2019. 7. 1	훈령	제453호
일부개정	2020. 12. 23	훈령	제477호
일부개정	2021. 6. 30	훈령	제490호
일부개정	2022. 12. 30	훈령	제513호
일부개정	2023. 12. 20	훈령	제53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시의 실·국장으로 하여금 담당관·과·소의 행정을 종합지도·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 ① 실·국장의 지도·감독·결재 담당 및 업무협조 담당은 별표와 같다.

② 과·소의 담당 실·국장은 담당 과·소에 대하여 공통적인 지도사항과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지도책임을 진다.

제3조(범위) 실·국장의 지도·감독·결재와 업무협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2. 각종 업무의 추진상황 지도 및 지원
3. 그 밖의 부시장 이상의 결재나 공람을 요하는 사항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6 훈령 제43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훈령 제45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3 훈령 제47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30 훈령 제49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훈령 제513호>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0 훈령 제53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3. 12. 20〉

용인시 과·소 지도·감독 및 결재, 협조 담당(제2조제1항 관련)

1. 지도·감독 및 결재

실·국명	과 명	사 업 소 명	비고
기획조정실	행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재정국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일자리산업국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주택국	주택과, 주택정비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물류화물과	차량등록사업소	
신성장전략국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과, 반도체2과, 4차산업융합과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플랫폼시티과		

2. 업무협조

구 분	사 업 소 명	비 고
교육문화체육관광국	도서관사업소	
복지여성국	보건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공원사업소	
도시정책실	푸른공원사업소	
교통건설국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